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7. 4. 21. 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 속 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7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3일

3. 제정이유

○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재량 휴업일 등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 휴가제를 운영하고,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에 따른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3일 이내에서 학습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.(안 제19조 9항)

○ 지방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일 수 중, 조부모, 외조부모 사망 시 2일을 3일로,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을 3일로 변경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.(안 별표 5)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 휴가제를 운영하고, 경조사별 휴가대상 및 일수를 3일장 중심의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따라 기존의 특별휴가 대상과 기간 보다 확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·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동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동 조례개정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 증진과 사기진작, 학교현장에 부합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리라 사료됨.
- 다만,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의 장의 재량권이 확대 되는 것인 만큼, 이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